

# 原產地 表示制度 總括

産業資源部 輸入課

본 자료는 각국과의 FTA(자유무역협정) 체결에 따른 우리 증전업계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「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내용」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.

## I. 原產地 規程의 概要

### 가. 원산지의 개념

- 원산지(Country of Origin)란 물품이 생산된(동식물이 성장한)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
-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, 자본의 투자국·디자인 수행국·기술의 제공국·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

### 나.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중요성

- 원산지 규정(Rules of Origin)은 물품의 국적,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
- 원산지 기준은 원료를 글로벌 소싱(Global Sourcing)하거나, 글로벌 제품생산(Global Manufacture)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미를 가짐

| 예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 기준              | 미국 기준              | WTO 협정(안)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직물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| 재단기준<br>(원산지 : 한국) | 봉제기준<br>(원산지 : 중국) | 봉제기준<br>(원산지 : 중국) |

〈그림 1〉 각국의 상이한 원산지 기준

## 다. 국제적 협상에서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논의

최근 다자간 · 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협상이 활발

○ WTO 중심으로 다자간 비특혜 원산지 협상이 진행 중임

- WTO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통일화 작업을 수행 중임
- 통일원산지 규정이 제정되면 원산지 표시, 반덤핑, 세이프가드 등 모든 비특혜 무역정책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

\* 비특혜 원산지 규정(Non-Preferential Rules of Origin) : 반덤핑관세 · 상계관세부과, 원산지표시, 세이프가드, 차별적 수량제한 등의 무역정책수단과 정부조달, 무역통계작성 등에 있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

○ 양자간 자유무역협정(FTA) 등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협상도 활발

- '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협상을 말함
- 양허안 협상에서 무세화 물품으로 결정되더라도 원산지 협상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중요

\* 특혜 원산지 규정(Preferential Rules of Origin) : 유럽연합(EU),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등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(GSP), 개도국간의 특혜관세제도(GSTP), 다자간 무역협정인 방콕협정(ESCAP) 등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

## II. 原產地 判定基準

완전생산기준(Wholly Obtained Criterion)

○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함

\* 대외무역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,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,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1조제1항 참조

- 양국에서 수확 · 채취한 식물과 광물
-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

-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

□ 실질적변형기준(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)

○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로 함

\* 대외무역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,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,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1조제2항 및 제3항 참조

① 세번변경기준(Tariff Shift Rule)

○ 원료(Input)와 완제품(Output)의 세번(국제적 분류기준인 HS 품목번호)을 비교하여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

- 세번변경기준은 전국 42개 세관이나 시·도 및 무역거래자 누구든지 객관적인 HS 세번만 알면 판정이 가능한 기준

○ 현행 대외무역법은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

〈 세번변경기준 〉

◇ HS 코드는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 앞에서 두자리를 류(chapter), 4자리를 호(heading), 6자리를 소호(subheading)라고 함

○ 2자리에서 4·6·10자리로 갈수록 대·중·소분류로 세분화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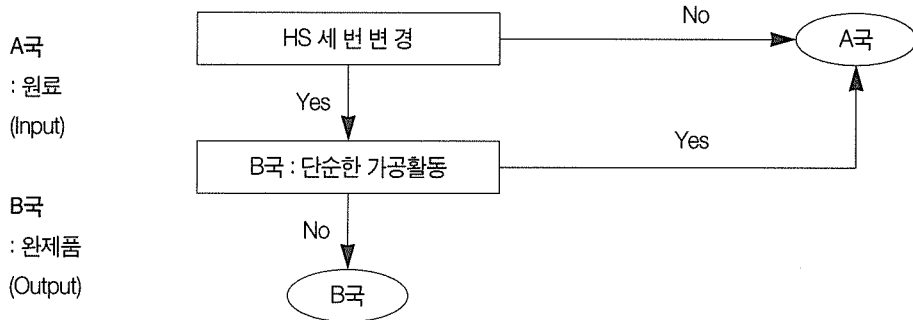
◇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(CC : Change of Chapter), 4단위 변경(CTH : Change of Tariff Heading), 6단위 변경(CTSH : Change of Tariff SubHeading) 등이 있음

○ HS 4단위 변경(6단위 변경)이란 원료의 HS 번호와 완제품의 HS 번호를 비교하여 앞에서 4단위(6단위)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

\* 라이터 노즐 및 부품(HS 9613.90)으로 일회용 라이터(HS 9613.10)를 만드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CTSH이면 원산지가 인정되고, CTH이면 불인정

○ 단,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한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

\*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,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1조제7항 참조



〈그림 2〉 세번변경기준의 적용

② 부가가치기준(Value-added Rule)

-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비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당해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
  - 이 기준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, 정확한 부가가치비율을 환산하기가 어렵고 세관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되는 등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용하지 아니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
- 현행 대외무역법은 카메라 원료나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(FOB 가격기준)의 35%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

③ 특정가공공정기준(Processing Operation Rule)

-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
  - \* 예 : 커피는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, TV는 브라운관(CRT) 생산국이 원산지
- 현행 대외무역법은 재단한 직물을 봉제하여 완성한 의류의 경우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음

◇ 현행 대외무역법은 세번변경기준(HS 6단위 변경)이 원칙이며, 부가가치기준(카메라) 및 특정 공정기준(소, 돼지, 의류 등)을 보완적으로 적용

### III. 原產地證明書 發給制度

-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(비특혜)의 경우 전국 56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,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(특혜)의 경우 전국 51개 상공회의소, 42개 세관,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
-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건수는 감소하고 있고,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
- 한·칠레 FTA 체결로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확인제도는 미흡

### IV. 原產地 表示制度

#### 가. 원산지 표시제도의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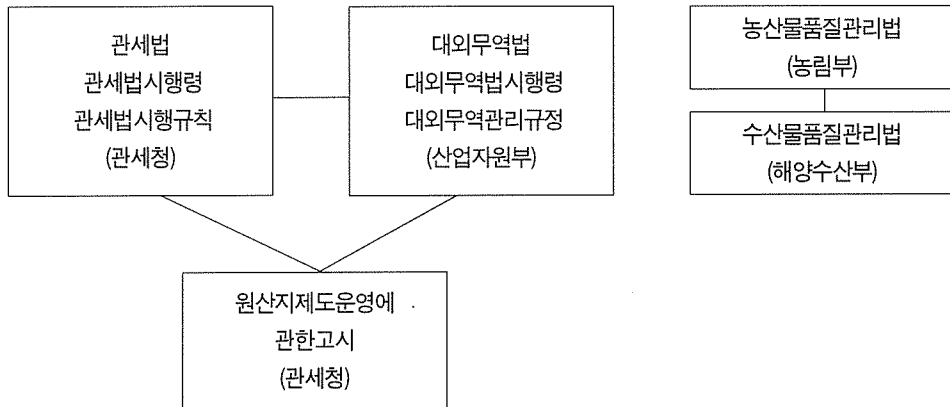
-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

| 구 분       | 품질표시         | 원산지 표시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규 제 성 격   | 권고사항         | 의무사항               |
| 대 상 물 품   | 극소수 : 30개 품목 | 방대 : 수출입 물품의 52.5% |
| 표 시 방 법   | 스티커 가능       | 현품표시(각인) 원칙        |
| 위 반 시 처 벌 | 없음           | 과징금, 벌금 등          |

〈표 1〉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

-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(GATT 제9조)에 근거한 무역정책수단이며 우리나라는 「대외무역법」에 반영
  - \*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물품에 대한 표시 규정으로서 무역정책수단은 아님
- 원산지 표시는 제품가격 및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영향
  - 같은 Sony 브랜드라도 원산지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음
  - \* 원산지 효과(Rules of Origin Effect)란 마케팅 및 광고에 쓰이는 용어로서 원산지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뜻함

나.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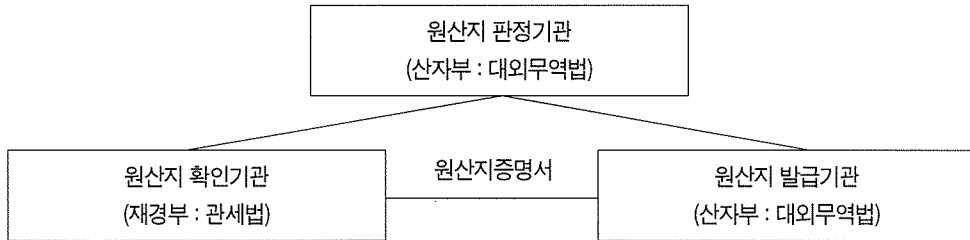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체계도

다. 원산지 제도의 기관별 역할분담

- 국제적으로 원산지 판정·발급·확인 은 각각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·논의되고,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존중하고 있음
- 원산지 판정은 실체적 규정이며, 발급 및 확인은 절차적 규정임
- 같은 절차적 규정이라도 원산지 발급과 확인은 별도기관이 운영하게 하는데 이는 세관의 규제마인드가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

| 구분     | 국제기구             | 국내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근거 및 활동 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원산지 판정 | WTO<br>(세계무역기구)  | 산자부<br>(대외무역법)                    |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<br>WTO 통일원산지협상<br>WTO 원산지위원회<br>FTA 원산지협상   | 무역이슈         |
| 원산지 발급 | ICC<br>(국제상공회의소) | 산자부(상의, 세관)<br>(대외무역법,<br>상공회의소법) | ICC 국제협약(1923)<br>원산지증명서 TF<br>(e-CO 발급 등 논의)          | 무역이슈<br>수출통관 |
| 원산지 확인 | WCO<br>(세계관세기구)  | 재경부(관세청)<br>(관세법)                 | WCO 원산지기술위원회<br>교도협약(통관절차간소화 및<br>조화에관한협약)<br>FTA 통관협상 | 통관이슈<br>수입통관 |



〈그림 4〉 기관별 원산지제도 역할분담 체계

□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출입되는 물품 또는 농수산물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적용

○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·표시 기준은 개별법에서 운용되고 있으나,

- 수입원료를 가져와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국산 공산품에 대한 판정기준은 없음

\* 최근 수입산 천일염을 국내에 들여와 국산 소금과 혼합하여 재제염을 만든 경우 원산지 판정을 적용할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빈발

| 구 분    |        | 농산물                   | 수산물      | 공산품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해외생산물품 | 통관단계   | 대외무역법(산자부장관이 세관에 위임)  |          |     |
| 수입시    | 국내유통단계 | 대외무역법(산자부장관이 시·도에 위임) |          |     |
| 국내생산물품 | 국내유통단계 | 농산물품질관리법              | 수산물품질관리법 | 흄결  |

〈표 2〉 물품의 통관·유통단계에서의 적용법률

○ 2003년에는 국내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제정할 계획

- 대외무역법의 적용대상을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 생산·판매 물품으로 확대하고, 표시·광고 행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

□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나,

○ 원산지 표시기준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

\*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 참조

라.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

◇ 허위가 아닌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, 통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원산지 표시가 손상이나 변경없이 유지되어야 함

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해당

\*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3호 참조

○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52.5%(HS 4단위 기준)만 대상임

- 대부분의 식품, 가전제품 등 소비재는 포함되고, 베어링 등 부품·소재의 경우에도 표시대상

\*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,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제1항,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2-2조제1항 및 별표 6-1 참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전체 품목 : 1,244<br>(HS 4단위 기준) |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<br>: 653 (52.5%) | 농산물 | 169(25.9%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산품 | 484(74.1%) |

〈표 3〉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비율

○ 현재 통관단계의 세관 검사율이 5.5%에 불과하여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

-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한 위반행위임

원산지는 표시하였으나,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르게 표시하였거나,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에 해당

\*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

○ 중국산 라이터 부품(HS 9613.90)을 베트남에서 조립(HS 9613.10)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행위임

\*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

○ 영어로 씌어진 폴로 T셔츠의 구석진 곳에 원산지는 태국으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임



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통관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 떼어내는 경우 원산지 손상·변경 행위에 해당

\*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 참조

○ 중국산 의류를 국내 공장에서 표시를 떼어내고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

**마. 원산지 위반시 처벌**

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

○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, 3,000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

\* 대외무역법 제23조제5항 참조

검찰에 고발하여 벌칙 부과

○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고의·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

\* 대외무역법 제5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참조

**바. 전기용품의 안전인증표시상 '제조국' 과의 비교**

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제조업체 명을 기재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, 당해 업체가 외국의 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해야 함

\*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,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,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 제2조 참조

○ 안전인증표시상의 '제조국' 은 해당 전기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·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뜻하고,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의 적용으로 결정되는 '원산지' 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어 양자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| 안전인증표시상의 '제조국'     |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'원산지'      |
| 의미        | 제조업체의 소재지          |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<br>일어난 곳  |
| 목적        | 위해 발생시<br>책임소재의 규명 |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<br>정보 제공 |
| 적용법률      |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       | 대외무역법                 |
| 표시방법 (원칙) | 라벨링(labeling)      | 마킹(Marking)           |

〈표 4〉 '제조국' 표시와 '원산지' 표시

### V. 原產地 團束의 必要性

- 최근 중국, 동남아산 중저가 수입공산품의 급증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잠식되는 상황 발생

| 구 분   | 주요 품목       | 주요 피해사례   | 비중(%) |
|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|
| 가 구   | 식탁, 소파      | 국산, 또는 유명 브랜드인데 원산지는 중국이어서, 품질에 문제가 많으며 반품 또는 A/S 등이 곤란 | 36.4  |
| 전자제품  | 홈씨어터, 오디오세트 |   | 36.4  |
| 건 자 재 | 화장실용 타일     |   | 9.1   |
| 생활용품  | 가방, 지갑      |   | 18.1  |

※ 자료 : 소비자보호원

〈표 5〉 원산지 표시관련 주요 피해품목

- 이에 따라 중저가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시장의 잠식 속도를 조절하는 대책마련이 시급
- 특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차별화하여 제값 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
- \*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30%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, 고급라이터로 갈수록 최대 5배 정도 차이
- 지난해에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이 향상되었으나, 국내 유통 수입공산품에 관해서는 농산물이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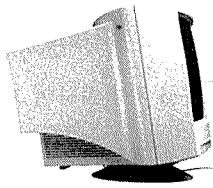
통관단계의 원산지 단속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

- 이에 국내 유통 수입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,
- 원산지 단속실적이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지자체가 원산지 단속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유도

| 구 분       |     | 단 속 실 적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| 2001년          | 2002년          |
| 수입통관(세관)  |     | 2,374건( 59,9%) | 2,982건( 59,1%) |
| 국내유통(시·도) | 농산물 | 1,439건( 36,3%) | 1,799건( 35,6%) |
|           | 공산품 | 152건( 3,8%)    | 268건( 5,3%)    |
| 총 계       |     | 3,965건(100,0%) | 5,049건(100,0%) |

※ 자료 : 산업자원부

<표 6>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



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

<http://www.koema.or.kr>